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제정 퇴직연금복지과-1062 (2021. 3. 4.)

제1장 목 적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그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과 생활원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이 원칙임
-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만 두고 있고 투자 의사 결정이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실정임
 - 기금은 예금 등 예금성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증권·채권 등 투자성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여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복지사업의 중단·축소로 이어져 안정적인 기업복지제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기금의 각각의 운용 방법에 대해 투자 의사 결정 절차나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제2장 기금 운용의 기본원칙

- 기금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생활원조 등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영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함

□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운용할 수 없음

○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국내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회사 포함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국가마다 신인도에 따라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

○ 기금이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제3장 기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 및 내부통제

□ (기본방향) 운용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투자의사결정 절차를 차등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 **(운용 상품별 의사결정 절차)** 운영 방법에 따른 운용 상품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각각의 운용 상품에 대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예금)** 기금법인 이사회(또는 이사)의 결의로 운용 가능

○ **(금전신탁)** 복지기금협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 가능

○ **(수익증권)** 복지기금협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이 가능하되, 기금 규모의 20%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투자 시에는 복지기금협회의 의결에 앞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의 시 활용하여야 함

* "외부전문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

○ **(국채·지방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채권은 기금법인 이사회(또는 이사)의 결의로 운용 가능

○ **(그 외의 채권)**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A⁺ 이상인 채권은 기금법인 이사회(또는 이사)의 결의로 운용 가능하고,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A 이하인 채권은 복지기금협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 가능

* "신용등급"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같은 조 제26항에 따라 부여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말함

○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발행 주식)** 복지기금협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이 가능하되, 기금 규모*의 20%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투자 시에는 복지기금협회의 의결에 앞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의 시 활용하여야 함

*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함

[표] 운용 상품별 의사결정구조

구분	운용 방법	운용 상품	의사결정기구	외부전문가 자문	
예금성 상품	①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예 금	기금법인 이사회		
		금전신탁	복지기금협의회		
투자성 상품	②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수익증권	복지기금협의회	투자 규모가 기금의 20%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 필요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 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국채, 지방채	기금법인 이사회		
		금융채 등 사채	채권신용 등급 A+ 이상	기금법인 이사회	
			채권신용 등급 A 이하	복지기금협의회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복지기금협의회	투자 규모가 기금의 20%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 필요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복지기금협의회	투자 규모가 기금의 20%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 필요		

참고

수익증권의 종류

기준	종 류	내 용	
투자 지역에 따른 구분	국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해외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투자자 수에 따른 구분	공모	불특정 다수(50인 이상)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운용하는 펀드	
	사모	50인 미만의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운용하는 펀드	
투자 대상에 따른 구분	주식형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채권형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혼합형	주식	자산의 50% 이상 60% 미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채권	자산의 50% 미만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부동산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대부분 환매가 제한되는 장기투자용도	
	특별자산	원자재, 지적재산권 등 증권, 부동산 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혼합자산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 투자대상을 제한없이 투자하는 펀드	
	MMF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콜(call)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